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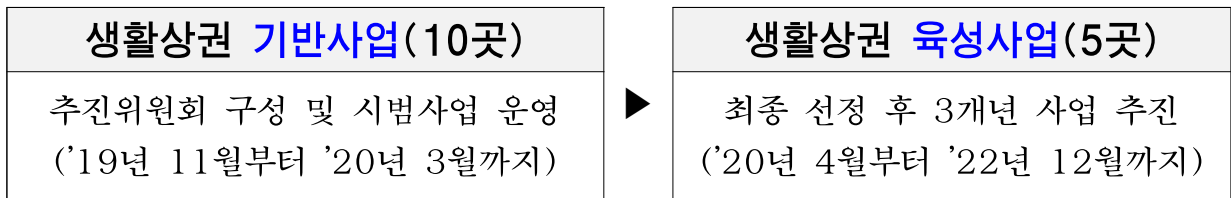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 지역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1. 추진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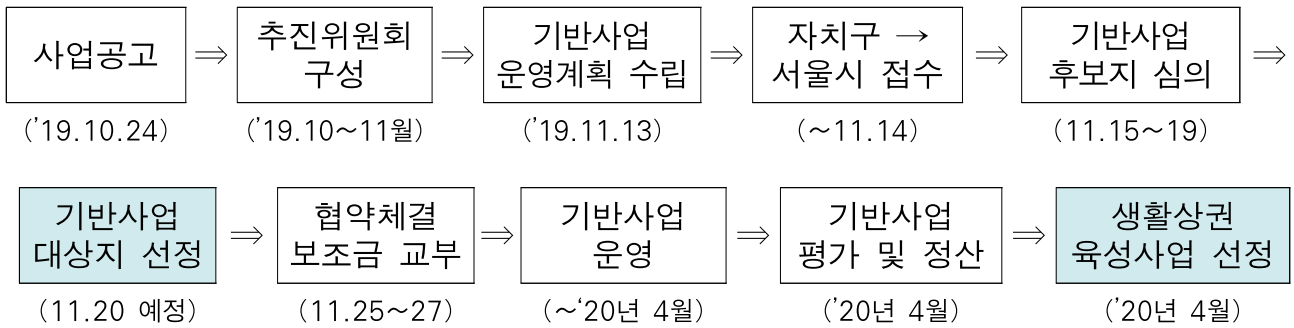
- 대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등 심화되는 경쟁에서 주민과 상인, 사회적경제 등이 함께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기반 조성 → 본 사업 추진」 단계별 선정·실행 -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완성도 평가 후 「생활상권 육성사업」 선정·지원



2. 공모분야 : [생활상권 기반사업]

- 제안내용 :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반사업 운영에 관한 계획
 - ① 상인, 주민, 지역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의체이자, 향후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②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한 사업 대상 후보지 제안 및 현황 자료
 - ③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동네가게 방문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계획
 - ④ 대량생산, 가정간편식 등과 차별화를 위해 우리농산물을 주재료로 장인이 직접 만드는 동네가게를 발굴·홍보하는 ‘손수가게’ 운영 계획
-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가이드’ 등 참조
- 지원금액 : 사업지 당 9천만원 범위

3. 공모절차



4. 신청주체 : 자치구 (추진부서, 협조부서 지정)

- 추진 및 협조부서 지정은 자치구 자율이지만, 생활상권 사업은 주민과 상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체들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므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 부서를 추진부서로 사회적경제 등 관련 업무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할 것을 권장
-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구성 후 명부 등 제출
 - 생활상권 기반사업 선정 후에는 교부금 사용 및 정산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로 설립할 수 있어야 함
-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
 -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주요사업 의사결정, 커뮤니티스토어 및 손수가게 실행 주체 선정 및 운영,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및 소통 등
 - 사업 운영주체로서 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보고 등
-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참여 대상 및 구성
 - 사업 대상 후보지 내 상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 대상 후보지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지역 활동가 등
 - 사업 대상 후보지 또는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등
 -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분야별 구성비는 자율
 - 추진위원장은 위원들의 비공개 투표 등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

추진위원회 참여 제외대상

- 보조금 횡령, 임금체불 등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개인

5. 지원 대상 및 사업 대상 후보지 확정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사업 대상 후보지 확정

- 자치구당 최대 3곳까지 사업 대상 후보지 제안 가능
- 정주민구의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반경(0.8~1.5km)을 하나의 생활상권 사업 영역으로 확정
- 정주민구의 생활중심지는 1)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2)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3)지하철역 등 교통중심지 4)공원 등 근린시설을 접근성에 의한 집적도 분석으로 도출
- 생활상권 기반사업 신청 시 ‘생활상권 분포도’ 참조해 자치구에서 확정
- 단, ‘생활상권 분포도’는 서울시에서 생활상권 현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리정보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생활상권 구역과는 차이가 있음

※ 8차로 이상의 도로변, 역세권, 상점 고밀집 지역 등 발달상권은 제외

생활상권 분포도 홈페이지

- <http://bitly.kr/JakNQMQ> (PC에서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6.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9년 10월 29일(화) ~ 11월 14일(목) 18시까지

○ 제출 서류

- 생활상권 기반사업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
- 제출서식 내려받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접수 및 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02-2133-5558, 5539)

7. 심의 및 선정 (생활상권 기반사업 10곳 선정)

○ 기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경영·마케팅, 상권, 사회적경제, 지역활동,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구성
- 심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세부 심의계획 수립

○ 심의 참석대상 및 심의 방법

- 자치구 추진부서 공무원, 생활상권 추진위원장 및 위원 1인 이상 필수 참석
-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현장심사 시행
 - ※ 심의 일정 등은 추후 자치구 담당부서로 공지

○ 선정발표 : 2019년 11월 20일 (예정)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자치구,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서울시 3자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요)

○ 사업비는 자치구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라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시 지급

※ 사업 선정 후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수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20.03.27.까지 제출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붙임자료2. 사업비 편성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완료 후 자치구를 경유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별도 교육 및 안내합니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참여자 등은 서울시 주관 교육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권활력센터(☎02-2133-5558, 5539) 및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신청서식 1부

붙임자료

목 차

붙임1.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 가이드	7
붙임2. 사업비 편성기준	10
붙임3-1. 생활상권 기반사업 참여신청서	13
붙임3-2. OO지역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계획서	14
붙임3-3. OO지역 생활상권 기반사업 대상구역(안)	15
붙임3-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6

【붙임 1】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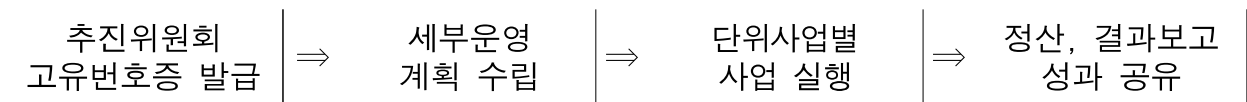
□ 추진 배경 및 목적

- 과거 상점가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기반부족으로 인한 사업효과성 저하
 - 사업방향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행정과 현장의 갈등, 예산 낭비 등 발생
- 본 사업(생활상권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추진주체 간 협력, 생활상권 사업방향의 이해, 지역 내 공감대 형성 등 사업기반 구축 필요
- 「생활상권 기반사업」 내 단위사업별 사업취지 및 운영내용은 아래 표 참조

단위사업	사업취지 및 운영내용
커뮤니티 스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가게를 커뮤니티 거점으로 육성 → 주민 보행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기존 상점에서 제공하기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개선,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중물적 지원 등 ※ 예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택배함, 동네상점 간 함께배송 등
손수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생산·가정간편식 등과 차별된 장인의 육성으로 동네이용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수가게는 ①우리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 ②천연조미료로 맛을 내고 ③가게 주인이 직접 만드는 곳으로 정의 ○ 주민이 가고 싶은 가게를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수가게의 '발굴→선정→상점개선→홍보' 전과정을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손수가게 기획단' 중심으로 운영 - 향후 핸드메이드 소품, 의류, 가구 등으로 확대 예정

□ 사업의 흐름

- 기반사업 운영기간: '19년 11월부터 '22년 4월 중순



-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성과에 따라 「생활상권 육성사업」 선정 및 추진
 - 결과(실적)보다 과정에서 참여자간 협력성, 사업방향 이해도 등에 중점
 -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 현장 행정지원 등 제공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가이드 및 주요과제

-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발굴
 - 연령대, 가구유형, 직업 등에 따라 동네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오픈테이블 등 의견수렴 방안 필요
- 다양한 추진주체 간 토론·수용·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 일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주도로 사업 추진 시 사업 실효성의 저하, 지역 내 갈등, 주민·상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역량 성장에 한계가 있음
- 지역 내 공감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
 - 동네가게들이 상점 이윤을 넘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려는 점을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손수가게」 운영가이드 및 주요과제

- 주민이 가고 싶은 가게를 만들기 위한 손수가게 기획단 구성·운영
 - 자녀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고 가족, 친구와 가고 싶은 가게 만들기
 - 상인의 영업 편의성 제고에 중심을 둔 지원사업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
- 세부 선정 기준 수립 후 손수가게 발굴·심의
 - 모든 메뉴와 재료에 우리농산물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점 선정을 위한 메뉴와 재료의 범위, 선정 이후 유지관리 방안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손수가게 선정 상점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 손수가게와 무관한 방향의 상점 인테리어, 매대 제작, 장비 구입 등은 불가
 - 주재료를 구입하는 산지 또는 농부의 스토리, 차별화된 재료 구매 기준, 상인만의 조리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상점 내외부 개선 및 홍보 지원

운영과정 아카이빙 및 결과보고 시 자료 제출

- 기반사업 운영 과정을 기록, 개선점 도출 및 보완(서울시 운영)
 - 아카이빙 자료는 「생활상권 육성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
- 운영가이드에 제시된 주요과제 관련 자료 제출
 - 회의록, 설명회 등 활동기록, 안내물 및 홍보자료, 주민의견수렴 자료 등
 - 각 실행단계별 증빙 자료, 집행내역(영수증 첨부) 등

【붙임 2】

사업비 편성기준

1.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 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다만, 사업실행 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 이행보증 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격려금 등)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주민모임, 지원단체 소유차량의 유지관리비 등

2. 분야별 사업비 편성 기준

- 활상권 기반사업 지원예산 : 90백만원 이내

사업명	편성 내용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백만원 내외■ 모임공간 단기임대 및 운영, 추진위원회 외 협의체 운영 등에 활용
커뮤니티 스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백만원 내외■ 주민·상인 등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및 활동비■ 전문가 자문 및 교육 등을 위한 교육 자문비■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물 신규 설치, 장비 구입■ 커뮤니티 스토어 방문제고를 위한 광고·홍보비 등
손수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백만원 내외■ 손수가게 기획단 회의 및 활동비■ 전문가 자문 및 교육 등을 위한 교육 자문비■ 손수가게 상점 개선 및 홍보비 등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스토어, 손수가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참여자의 활동비는 총액의 25% 미만 이내 편성■ 집행 및 정산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참조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예산편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심의 과정 또는 선정 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사업 운 영 비	추진위원회 참여인원 및 손수가게 기획단 활동비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 경비	1인 시간당 단가 10,150원 교통비 회당 5천원 (월 최대 4회 지급)	활동기록부(서명) 활동가 이력서 활동가 경력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전문가 인건비	사업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경비 (프로그램 기획 및 분석 등)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참고	활동기록부(서명), 활동가 이력서, 활동가 경력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단순 활동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활동기록부(서명) 활동가 이력서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회의참석 및 자문비	사업관련 회의, 자문시 외부 전문가, 활동가 초빙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초과시 15만원	회의참석확인서(서명) 참석자 이력서, 회의록 등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기획비	주민의견 조사 (설문조사비, FGI, 공청회 등에 따른 대관료 등)	실비 정산	회의참석확인서(서명) 참석자 이력서, 회의록 등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손수가게 상점개선비	손수가게 상점 변화에 따른 실비 지원 (상점 매대 리뉴얼, 친환경 포장재 구입 등)	자산취득관련 항목 제외 (매매를 통한 현금화 가능한 품목)	실비 영수증
	홍보 인쇄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구입비용	실비 정산	견적서, 홍보물 도안 홍보물 설치사진, 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 산서, 이체확인증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	실비 정산	사업진행 사진, 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 서, 이체확인증
	활동거점 임차료 및 공과금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활동공간(사랑방) 임차료, 전기, 수도, 가스 공과금	월 100만원 이내	임대차 계약서, 계좌 이체 확인증, 주민모 임등 활동사진, 공과 금영수증
	(단기) 임차료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회의실 등 임차료 (주민모임 구성원 개인소유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불가)	실비정산	견적서, 활동결과보고서,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다과비	사업에 필요한 활동 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1인 : 3천원 이내 (실비정산)	활동사진, 카드영수증 (사업내용 및 인원기록)	

	홍보물 편집 디자인비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등의 편집 디자인비	1면당 : 8만원 이내	결과물(도안),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조사 답례물품 제작비	지역조사 및 인터뷰 답례물품 구입 및 제작비용	개당 3천원 이내 (실비정산)	견적서, 활동결과보고서, 사진,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시설비	시설비	주민 활동공간(사랑방) 조성 공사비	최대 900만원 이내 (실비정산)	비교견적서, 공사설계도안, 공사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붙임 3-1】

생활상권 기반사업 참여 신청서

자치구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E - m a i l	
	협 조 부 서		담 당 자	
	전 화		E - m a i l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핸 드 폰	
	실무자성명		핸 드 폰	
	실무자 E-mail			

	연 번	성 명	소 속	직위/직함	서 명
추진위원회 구성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생활상권 기반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생활상권 기반사업 추진위원장 (인)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제출서류(붙임3-1~5)

- ① [커뮤니티 스토어] 및 [손수가게 육성] 운영 계획서 등 붙임서류 3-1~3-5 각 1부
- ② 자치구 담당자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1부

OO지역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계획서

사업지 현황 및 필요성

-
-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
-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계획

-
-

손수가게 운영계획

-
-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 내 공감대 형성 방안

-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예산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를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항목 추가 가능)			
※ 예산 총액 최대 90백만원 이내			
총 액			
추진위원회 운영비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비			
손수가게 운영비			

OO지역 생활상권 기반사업 대상구역(안)

축적 1: 10,000~ (1cm=100m)

〈 생활상권 신청 구역 예시 〉



: 정주생활중심지



※ 선정 후 20일 이내 서울시에서 구역 확정 조정 예정

※ 8차로 이상의 도로변, 역세권, 상점 고밀집 지역 등 발달상권은 제외

【붙임 3-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청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생활상권 기반사업” 참여 신청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상권 기반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서울특별시, 전문 운영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상권 기반사업” 참여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인)